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 12. 19.(금)
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-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0일

-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장희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의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(안 제11조)

※ 4년 연장 (현행) "2014년 12월 31일까지" ⇨ (개정) "2018년 12월 31일까지"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박준순)

- 자문단은 조례 제2조(기능)에 따른 도지사의 자문·협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,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존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**주요기능** : 도정의 장기발전 방향 및 주요정책 결정사항,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사항, 현안사업 대처·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
- 단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의 용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‘기타’ → ‘그 밖에’ (제2조제4호)
- ‘기타’ → ‘그 밖에’ (제3조제2항제4호)
- ‘기타’ → ‘그 밖의’ (제3조제3항)
- ‘해축’ → ‘위축 해제’ (제3조제3항)
- ‘새로이’ → ‘새로’ (제3조제4항)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### 7. 수정안 요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2. 10, 박한범 의원

- 수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.

○ 주요 수정내용

- 안 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함
- 안 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함
- 안 제3항 단서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하고,  
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제” 로 함
- 안 제4항 중 “새로이” 를 “새로” 로 함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참고자료. 도정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동실적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95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14. 12. 1.(월)  
제안자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수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의 용어 일부를 수정함.

#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수정함
- 안 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수정함
- 안 제3항 단서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수정하고,  
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제” 로 수정함
- 안 제4항 중 “새로이” 를 “새로” 로 수정함

#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첨부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기 타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3항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해촉”을  
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4항 중 “새로이”를 “새로”로 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도정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의 자문·협의를 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<u>기타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<u>새로이</u>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황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<u>새로</u>----- -----.</p>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해촉” 을  
“위촉 해제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항 중 “새로이” 를 “새로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2014년 12월 31일”을 “201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도정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자문·협의에 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<u>기타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<u>새로이</u>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.</p> <p>④ -----<u>새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<u>2014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하되,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유효기간) ----- ---<u>2018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9조(수당)
 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자문단 5개 분과 70명, 전체 및 분과별 워크숍 개최(21회)
- 다. 추 계 결 과 : '15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60,000천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
세 출	16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및워크숍비용	16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40,000천원정도 (운영수당 20,000천원, 워크숍비용 20,000천원)

### 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박인용

□ **참고자료.** 도정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동실적

○ 구성인원 : 5개분과 70명(제2기 13. 5.10일 구성)

계	공공혁신분과	복지여성분과	문화관광환경분과	산업정책	지역발전
70명	11	14	16	15	14

○ **도정정책자문단 2014년 활동실적**

- '14. 업무계획 및 위원회관련 운영협의회 개최 : 1.17, 8.27, 10.8
-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등 현안자문 분과위원회 개최 : 11회
- 정부 주요계획 도정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등 : 4회(1.8, 2.26, 3.5, 5.22)
- 안전 강화방안 마련 등 각종 도정현안 자문 : 11회

※ 도정 정책자문단 전체 워크숍 : 12.12개최계획, 도정 개선과제 연구 발표(15건 분과별 3건 등)

○ **도정정책자문단 자문내용 및 주요 반영사례**

자문내용	조치결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충북발전연구원 적정예산 지원 및 고급인력 활용전략 필요</li> <li>지역대학 등과 산학협력, 공세적 연구와 역할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5년 전년대비 5억이 증가한 25억 계상, 11개 시·군과 협력사업을 발굴, 시·군출연금 지원요청 예정</li> <li>• 지역대학 등과 연계, 산학협력등 연구 추진중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도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, 연구회를 구성하고, 단순 자문보다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4년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</li> <li>• '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숙원사업 제안권 부여예정</li> <li>• '16년 운영분과위 구성, 민 주도 제도 정착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도민 공모제안제도 '창업아이디어 콘테스트'와 같이 아이디어 심화, 창업연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5년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시 아이디어 콘테스트, 아이디어 심화 등 반영예정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입법예고문 도 홈페이지에만 공고, 모르고 지나는 경우 많음. SNS를 이용, 도 정책과 연계된 정보 등 게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5년부터 입법예고문을 SNS(트위터, 페이스북 등)에 동시게재 예정임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건발생시 언론대처 매뉴얼이 있어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정홍보 요령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중 제작, 각 부서 배부 예정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세종대왕 행궁건립 관련 초기계획 단계부터 내실화 중요. 문화, 예술,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종대왕 특화전략 마련 연구용역 수립 : 3.3-5.1</li> <li>• 초정행궁, 르네상스관, 치유의 숲, 초정약수의 체계적 관리, 바이오치료센터 조성 등 종합 콘텐츠가 담기도록 추진하고자 정부예산 확보 추진중(초정대왕 세종 르네상스 조성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충북대표 스포츠는 택견임. 택견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6회 세계택견대회(충주시) - '14.8.30.~ 8.31, 선수당 600명 참여</li> <li>• 제12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(충주시) - '14.6.14.~ 6.15, 선수단 450명 참여</li> <li>•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국택견대회(제천시) - '14.10.25, 선수단 500명 참여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청남대 재방문을 유도할 즐길거리 부족 픽스된 인프라(건는길 조성 등)보다는 언픽스된 아이템 발굴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춘제 개최(4.18~5.11) : 야생초화 전시, 체험행사</li> <li>• 기록문화전(4.8~5.11) : 역대 대통령 외교활동 사진 등 전시</li> <li>• 문화예술공연(9.9~11.16) : 국악, 보컬, 미술, 무용 등</li> <li>• 기록문화전(9.27~12.21) : 역대 대통령 선거벽보 등</li> <li>• 국회축제 개최예정(10.25~11.16) : 국회전시, 마칭밴드, 군악대 퍼레이드 공연, 체험행사 등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속리산 생태탐방길 조성 및 화학물질 사고방지 SMART 프로그램 운영 중간점검 기능 보완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속리산 생태탐방길 조성, 사업기간 '14~'16년까지, 12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을 투입, 추진 중임</li> <li>• 유해화학물질 저감 SMART프로그램 협약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 간담회 개최, 협약이행 등 공정개선 발표 →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집수당 지급(시간당 9,700원 × 월4시간)</li> <li>• 모범대원 해외연수 및 국내 선진지 견학</li> <li>• 자녀장학금 지급 및 피복구입 지원</li> <li>• 기타 업무수행 중 긴급 재해보상 등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전거도로 쉼터를 이용자가 별로 없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도시민의 산책, 운동공간 등을 분석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5년 당초예산에 5개소 예산 반영</li> <li>• 향후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시 이용자가 많은 곳과 도시민의 산책, 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</li> </ul>